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912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문대림・임호선・이원택

주철현 • 윤준병 • 박용갑

송옥주 · 임오경 · 김영호

허종식 · 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소멸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 촌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를 "제5호는 203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용) ①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				
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 <u>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u>	<u>제5호는 2035년 12월 31일까</u>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			
해서만 적용한다.	<u>하며, 제6호는 2025년 12월 31</u>			
	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u>적용한다.</u>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